

경운대학교 항공기술교육원교육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 전문교육기관의 명칭은 경운대학교 부설 “항공기술교육원” (이하 ‘기술교육원’이라 한다)이라 칭한다.

제2조(소재지) 본 기술교육원의 학과교육 및 실기교육 장소는 다음과 같다.

1. 학과 교육 -경북 구미시 산동면 강동로 730. 경운대학교 항공공과대학,기술교육원
2. 실기 교육 -경북 구미시 산동면 강동로 730. 경운대학교 기술교육원

제3조(교육과정명) 본 기술교육원에서 운영하는 교육과정명은 “항공정비사 양성”으로, 고등교육법 제21조에 의한 교육과정운영 기준 및 경운대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에 따라 실시하고 있는 교육과정에 부합되며,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04조, [별표 12]의 항공정비사 훈련기준 교육 과목 및 교육 방법을 준용하면서 학사학위가 병행되도록 하는 항공정비사양성 전문교육기관을 운영한다.

제 4조(목표) 본 기술교육원은 고등 교육법에 의하여, 고등학교에서 받은 교육의 기초 위에 고등 교육 및 항공정비분야에 관한 경운대학교에서 실시하는 항공정비사 전문교육과정을, 국제 민간항공기구 항공정비사양성 표준교육에 부합시켜 “외적 보다는 내적에 더 충실한 항공 기술인양성”을 목표로 한다.

1. 학생의 능력 및 적성에 맞는 다양화된 학습과정을 구성한다.
2. 항공기 현장실습을 통하여, 항공기 정비 실무 경험을 직접 체험한다.
3. 산업현장이 요구하는 이론과 실무능력을 고루 갖춘 항공기술인을 양성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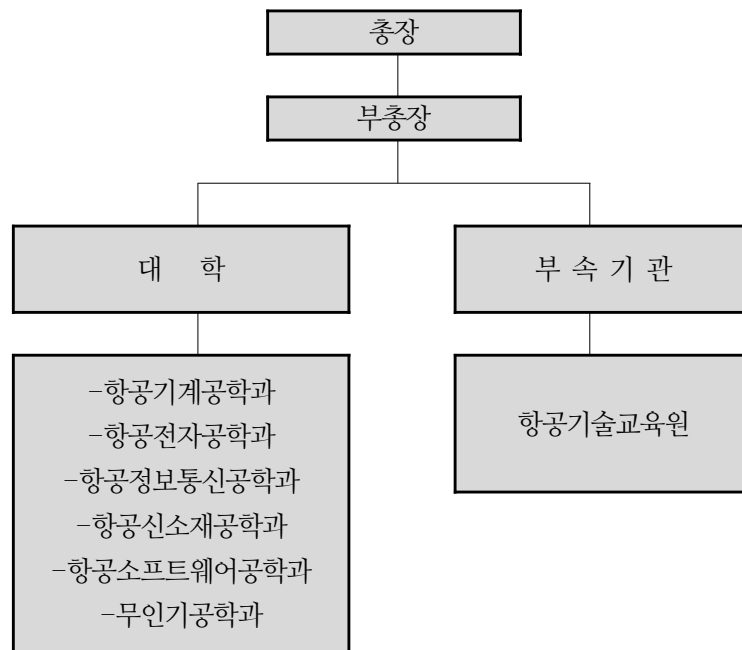
제 5조(목적) 본 기술교육원의 항공정비분야에 관한 전문교육은 항공안전법 제48조의3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4의 별표 12의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항공정비사 양성 전문교육기관으로서, 국제민간항공기구부속서 1에서 정한 항공종사자 자격별 훈련 및 지정업무에 관한 세부 사항과 절차를 정하여 항공종사자 전문교육훈련 및 전문교육기관 지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원활한 항공 종사자 수급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6조(교육대상) 본 기술교육원의 교육 대상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으로 한다.

1. 경운대학교 항공기계공학과 및 항공전자공학과에 입학한 학생.
2. 항공융합과정을 통하여 ‘항공정비과정’을 복수전공으로 선택한 학생

제2장 조직 및 책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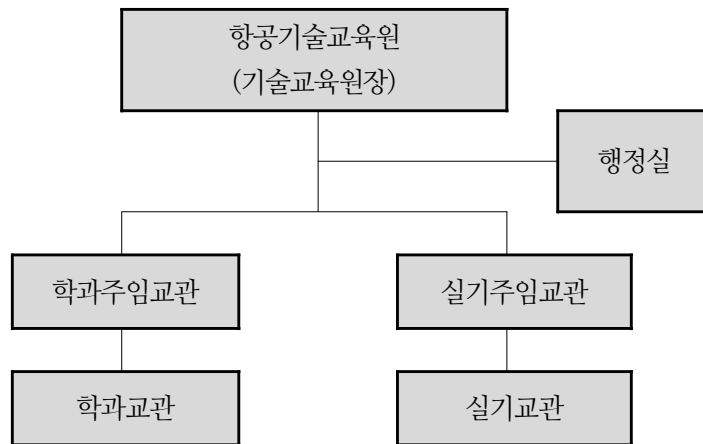
제7조(조직) 본 기술교육원은 경운대학교 항공공과대학 산하에 두며 경운대학교총장(이하 '총장'이라 한다)은 본 전문교육기관 운영의 최종적인 책임자이며, 항공공과대학장은 항공공과대학의 부설 기관인 항공기술교육원장(이하 '기술교육원장' 이라 한다)의 지휘 관리 권한을 갖는다.



경운대학교 조직도

제8조(구성원) 본 기술교육원에는 기술교육원장, 학과주임교관, 실기주임교관 각 1명을 선임하여 상주토록 하며 편성교과목 및 수강인원에 부합되도록 하는 적정인원의 학과교관 및 실기교관을 둔다.

1. 기술교육원장은 항공공과대학의 전임교원 중 항공정비사 면장을 소지한 자 중 항공정비분야의 지식, 경력, 능력 및 지휘통솔력을 갖춘 1명을 선임한다.
2. 학과주임교관은 항공기계공학과, 항공전자과의 초빙교원 중 항공정비사 면장을 소지한 자 중 항공정비분야의 지식, 경력, 능력 및 중간관리자의 능력을 갖춘 1명을 선임한다.
3. 실기주임교관은 항공기계공학과, 항공전자과의 초빙교원 중 항공정비사 면장을 소지한 자 중 항공정비분야의 지식, 경력, 능력 및 중간관리자의 능력을 갖춘 1명을 선임한다.
4. 학과교관은 실기교관을 겸직할 수 있다.



항공기술교육원 구성

제9조(교육원장의 책임) 기술교육원장은 경운대학교 항공공과대학 부설기관의 장으로서 항공안전 법과 같은 법 시행규칙 등에서 정한 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유능한 항공정비사 양성을 위해 아래 사항들을 시행하여야 한다.

1. 기술교육원 훈련목적과 교육지침 수립 및 적용
2. 기술교육원 소속의 구성원에 대한 관리 감독
3. 학과교관 및 실기교관의 업무 감독 및 교관회의 진행
4. 과정 입과자원의 충원에 대한 연차별 계획 수립
5. 과정 수료자원에 대한 취업촉진계획 수립
6. 경운대학교 항공기계공학과와 교육목표 달성을 위한 지원체제 구축
7. 비정규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운영방안 수립 및 운영관리
8. 실기시험관의 발굴 및 인력풀 관리
9. 외부 산학연계 협력활동

제10조(주임교관의 책임) 주임교관은 해당분야(학과, 실기)의 학습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하며 세부 주요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종합훈련
 - 가. 훈련활동 관찰 및 필요시 참여, 교관회의 진행, 훈련 진행 확인
 - 나. 교육장 등의 사유로 인한 주요 프로그램 변경 조정
 - 다. 학과교관 및 실기교관의 업무 감독 및 교관 선발
2. 훈련기준
 - 가. 학과 및 실기교관의 기준 프로그램 조정(학과 및 실기주임교관의 특별 프로그램 확인·인가 후 진행여부 확인을 위한 관찰 및 참여)
 - 나. 교육 및 훈련항목 프로그램 검토 및 수정이 필요시 관리자에게 통보
 - 다. 직원배치 및 장비 관계에 대하여 관리자에게 자문

- 라. 최신 훈련기법 유지를 위해 타 교육기관 방문, 연락, 협의 및 자료 조사
- 마. 필요시 신규 훈련기법 소개 및 도입(주요 수정내용을 국토교통부 및 관리자에게 자문)
- 바. 항공사에서 잘 적응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항공사 방문 및 연락관계 유지
- 사. 신규 교관에게 교육기관의 훈련목적 설명(각 신규교관에게 훈련항목 등의 사본 배부 및 이 해여부를 개별적으로 확인)
- 아. 모든 교관이 표준용어를 사용토록 교육 및 준수여부 감독

3. 기타사항

- 가. 제10조 가목에서부터 나목까지 정하지 않은 사항으로 이 규정에서 정한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전반적인 책임을 갖고 지휘 감독
- 나. 국토교통부의 관계규정 및 지시 등이 준수되는 지를 확인
- 다. 학과 및 실기교육 진행 및 학생복지 사항 등의 기록체제 확립
- 라. 학생진도가 미진한 경우 보완조치 결정 및 시행(계속 미진 시 관리자에게 자문)
- 마. 최종실기테스트 전에 모든 절차가 기준에 적합한 가를 확인
- 바. 기타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전반적인 업무에 관한 관리 감독
- 사. 경운대학교 항공기계공학과, 항공전자공학과 학과교육과정 편성에 따른 실기수업의 이관교육 담당

제3장 자격요건

제11조(교관 및 실기시험관의 자격요건) 항공종사자자격별 훈련기준, 지침 및 전문교육기관 지정요령 제6조 별표1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항이 준수되도록 한다.

1. 학과교관

- 가. 학과교관 중 1명을 학과주임교관으로 정하여야 하며, 학과주임교관은 학과교육 전반에 대하여 책임을 가지며, 학과교관을 겸임할 수 있다.
- 나. 학과교관은 학과의 과목마다 해당 과목에 대한 교육의 계획 및 실시를 담당하는 학과교관을 필요한 수만큼 확보하여야 한다.
- 다. 학과교관은 2개 이상의 과목을 담당할 수 있으며, 실기교관을 겸임할 수 있다.
- 라. 학과교관의 자격은 21세 이상으로, 해당 과목에 대한 지식과 능력을 갖추고, 해당 과목에 대한 교육경력과 해당과정에 맞는 항공정비사자격증명을 갖춘 자로서,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을 가질 것.(항공법규, 기초전기, 인적성능 및 한계, 수학, 물리, 일반기계과목은 제외한다) 단, 다음 교과목의 경우, 학과교관이 가져야 할 자격증명은 다음과 같다.

과목	자격증명 등
1. 항공장비 (전기, 계기, 전자, 무선 통신, 레이더 및 항법장비 등)	항공정비사 또는 해당 과목 교육에 적합한 국가기술자격을 가진 사람
2. 인적 성능 및 한계 중 항공생리·심리 및 구급법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또는 항공의학에 관한 교육을 받은 의사

마. 운영기준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04조 별표12의 제9호나목1)나)(1)에 의하여, 학과 교관의 강의는 학기 중 1주당 20시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학과교관의 강의준비 시간은 강의 1시간당 1시간 이상 주어야 한다. 단, 학과교관의 강의준비 시간은 강의 1시간당 1시간을 표준으로 한다.

2. 실기교관

- 가. 실기교관 중 1명을 실기주임교관으로 정하여야 하며, 실기주임교관은 실기교육 전반에 대하여 책임을 가지며, 실기교관을 겸임할 수 있다.
- 나. 항공정비사과정의 경우 실기교육과목마다 해당 과목에 대한 교육의 계획 및 실기를 담당하는 실기교관을 필요한 수만큼 확보하여야 한다.
- 다. 실기교관은 2개 이상의 과목을 담당할 수 있으며, 학과교관을 겸임 할 수 있다.
- 라. 실기교육을 받는 피교육생을 그룹(Group)으로 나눌 경우에는 그룹별로 담당실기교관을 지명하여야 한다.
- 마. 실기교관의 운영기준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04조 별표12의 제9호 나목2)나)(1)에 의하여, 학과 교관의 강의는 학기 중 1주당 20시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실기교관 한명이 담당하는 교육생은 12명 이하로 하며, 기초실기 교육은 반 단위로 실시할 수도 있다.

3. 실기시험관

- 가. 실기시험관의 자격요건과 운영기준은 항공종사자 자격별 훈련 기준·지침 및 전문교육기관 지정요령 별표1 의 4항에 따라, 교육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임명 후 국토교통부로 보고하고 운영한다.
- 나. 실기시험관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전문교육기관은 고시 별지 제2호서식의 실기시험관인정 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실기시험관 인정신청 기관에 대하여는 규칙 별표 12의 기준에서 정한 해당 교육과정별 실기시험관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고시 별지 제3호서의 실기시험관 인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 라. 실기시험관이 다음의 1에 해당될 경우 실기심사관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 1) 교육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 2) 부정한 방법으로 심사를 한 경우
 - 3) 실기심사를 행하는 능력이 부족한 경우

제 12조(기타) 제 11조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 중 다음의 내용들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교관은 그 교관으로부터 교육훈련을 받은 피교육생들의 80% 이상이 해당 시험에 합격할 수 있도록 자질을 갖추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교관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1명 또는 총교관수의 25% 미만의 보조 교관을 둘 수 있다.

제4장 학사운영

제13조(교육계획) 기술교육원장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104조 제1항 5호에 의하여,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항공기계공학과 학과장 및 총장의 승인을 득한 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 한다.

제14조(과정운영)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04조 제2항 별표12의 9 항공정비사과정 지정기준에 의거 항공정비사 양성과정을 운영한다.

제15조(교육인원)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04조 제2항 별표12의 9에 의거, 과정별 피교육생 연간 교육정원은 경운대학교 입학정원조정 계획에 따라 항공기계공학과, 항공전자공학과 및 항공융합과정 항공정비전공에 배정된 학년당 90명 이내를 대상으로 한다.

제16조(교육기간 및 편성)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04조 제2항 별표 12의 9에 의거, 항공정비사 양성기간은 전체 2.5년 2,440시간 이상으로 한다.

1. 교육진행

- 가. 학과교육 1,340시간을 주간 및 야간교육으로 진행한다. 단 일부교육 시간은 방학(하계, 동계)중에 실시할 수 있다.
- 나. 실기교육 1,100시간은 기술교육원에서 진행되도록 한다. 단 일부교육 시간은 방학(하계, 동계)중에 실시할 수 있다.
- 다. 연간교육계획서를 토대로 하여 전체 2.5년 과정동안 학과교육 1,340시간, 실기교육 1,100시간, 총 2,440시간을 진행하여 항공정비사 면장교육기간의 교육이행 총 시간 2,410시간 이상을 진행토록 한다.

2. 교육과정 편성

- 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04조 제2항 별표 12의 9에 의거한 교육과목 및 교육시간의 이행을 위한 교육과정은 경운대학교 항공기술교육원에서 편성토록 한다.
- 나. 기술교육원은 편성된 교육과정을 토대로 실기교육과정을 편성한다.
- 다. 1개 계절방학 기간 동안에 8시간 이상/일당, 5일/주당로 2주 이상 연속으로 교육이 진행되도록 편성하여 총 80시간 이상의 교육시간이 이수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편성한다.

제 17조(입과) 시행규칙 제104조 제2항 별표 12의 9에 의거한 교육과정의 입과는 다음과 같다.

1. 정규과정 입과시기
 - 가. 입과는 경운대학교의 매년 3월에 진행한다.
2. 정규과정 입과조건
 - 가. 입과 대상자는 경운대학교에 재학 중인 자로 한다.
 - 나. 입과 대상자의 결정은 경운대학교 항공융합과정 선택 후 결정한다.
3. 입과 구성
 - 가. 입과 대상자들의 반 구성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04조 제2항 별표 12의 9를 참고하여 구성하되 기초실습의 경우는 20명 이내로 구성할 수 있다.
 - 나. 1개 반당 담당교관 1명과 교육내용, 기자재 여건 등 제반 상황이 따라 부교관 1명 이상을 배정할 수 있다.
4. 입과 보고
 - 가. 기술교육원에 입과 한 자의 명단 및 교육기간을 교육과정별로 입과 후 1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결석자 처리 기준) 항공종사자 자격별 훈련기준·지침 및 전문교육기관 지정요령 별표4의2에 의거 최대 결석허용 기준은 총 교육시간의 15%이하하여야 하며, 결석학생에 대하여는 결석기간 동안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보충수업을 실시한다.

1. 보충수업대상자 : 총 과목별 교육시간의 결석이 15% 이하인 자
2. 보충수업시기 : 학기 단위
3. 수업 및 관리교관 : 담당교과 교관
4. 수업방법 : 결석 시간의 2배 이상 재수강하여야 하며, Report 또는 실습일지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재수강과 결과물 미제출시 해당 과목은 미 이수 처리한다.

제19조(교육시간) 항공종사자 자격별 훈련기준·지침 및 전문교육기관 지정요령 별표6의1항에 의거, 교육시간과 기간은 주 5일, 일당 8시간을 넘지 않도록 실시함을 표준으로 한다. 단, 기술교육원장은 교육충족시간 배정 및 교육과정편성 배정을 참고로 하여 방학 중 교육과정을 운영지시 할 수 있다.

제20조(교과편성)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04조 별표 12 의 9에 의한, 학과교육 및 실기교육으로 편성하여 실시한다.

1. 교과목별 교육시간은 35% 범위 내에서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전체 교육시간(총 2,410시간)이 단축되어서는 안 된다.
2. 기술교육원장은 특별한 경우 표준 교육시간 범위 내에서 합반 또는 교육시간을 변경 운영 할 수 있다.
 - 가. 강의(산업체, 공공기관, 영어강좌, 교양강좌 등)
 - 나. 항공관련 행사 및 산업체 현장실습 및 견학
 - 다. 기타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교육

제5장 시설 장비 및 비품, 교재

제21조(시설장비)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04조 별표12 및 항공종사자 자격별 훈련기준·지침 및 전문교육기관 지정요령 별표 2에 의한, 시설·장비 이상을 갖추거나 경운대학교 항공공과대학의 보유 장비를 상호 협력하여 사용한다.

제22조(교육교재) 항공정비사 양성을 위해 ICAO가 정한 범위와 수준 이상이 포함된, 국토교통부 표준교재를 주교재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부교재를 지정하여 사용한다.

제23조(교육비품)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04조 별표12 및 항공종사자 자격별 훈련기준·지침 및 전문교육기관 지정요령에 의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교육 비품 및 교육보조 자료를 갖추거나 경운대학교 항공공과대학의 보유 장비를 사용토록 한다.

제24조(안전보호장구) 기술교육원장은 교육생의 안전사고와 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 순찰 및 안전보고제도 등을 운영하며, 안전시설 설치, 안전보호장구(안전모, 보안경) 등을 비치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6장 평가

제25조(평가 방법) 항공종사자 자격별 훈련기준·지침 및 전문교육기관 지정요령 별표3 기준을 따르고,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시험 요령에서 정한 기준 이상으로 한다.

1. 학과 평가

가. 시험요건 : 총 교육시간의 85% 이상을 수료하여야 한다.

나. 성적판정 : 100점 만점의 경우 70점 이상을 합격으로 간주한다.

다. 추가교육 : 피교육생의 성적이 합격점 미만인 경우 학과교육 및 실기교육 훈련의 20%이내에서 추가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라. 재시험 : 학과 및 실기시험의 불합격 학생에 대해서는, 추가교육을 실시한 후 재시험을 2회까지 실시할 수 있고, 기타 과제물 등으로 대신할 수도 있다.

마. 종합평가 : 학과시험은 중간 30% 및 학기말 30%로 주관식과 객관식으로 평가하고, 매 학기말 출결사항 15%, 수업태도 및 Report 등의 항목을 25%로 종합하여 등급을 결정하며 실기시험은 교통안전공단 실기평가 항목과채점표를 준용하되 평가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

※ 비율

평가	시험	출결	태도 및 Report	총 점
비율	60 %	15 %	25 %	100 %

※ 학과 평가 등급

등급	A+	A	B+	B	C+	C	F
점수	100~95	104~90	89~85	84~80	79~75	74~70	70미만

※ 실기 평가 등급

등급	A	B	C	D
점수	100 ~ 90	89 ~ 80	79 ~ 70	69 이하

바. 출제범위 : 학과 주임교관은 과목별로 학과시험 출제범위를 정하여 과목별 교관에게 시험 2주전 제출하도록 지시하여야 한다.

사. 문제출제 : 시험 문제는 4지 선택형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교과내용에 따라 주관식을 출제하여 난이도가 안배된 정답 안을 출제할 수 있고, 학과 주임교관에게 시험 2주 전에 제출한다.

*쉬운 문제 : 45% ± 5%

*보통 문제 : 40% ± 5% *어려운 문제 : 15% ± 5%

아. 문제검토 : 학과 주임교관과 학과교관은 제출된 시험문제 및 정답 안을 검토하여 주임교관의 결재를 득한 후 시험문제를 인쇄하여 시험 전 까지 안전한 장소에 보관한다.

자. 답안지 : 학과 주임교관은 시험 감독관의 서명을 받아, 채점 후 주임교관의 확인을 받아, 최종 기술교육원장의 결재를 득한 후 보관한다.

2. 실기 평가 시험방법 및 실시요령

가. 실기평가는 국토교통부 항공종사자자격증명 시험요령 28조에서 의해서, 항공기체, 기관, 전기전자 실습실 등에서 실시하며, 현장실습을 나갈 경우 현장실습 장소 등에서 평가할 수 있다.

나. 실기평가는 국토교통부 항공종사자자격증명 시험요령 29조에서 32조에 의해서 실기평가 표준서의 내용의 실기 및 구술로 평가하며, 교육부 실습수행 평가 척도안에 의해서 실습일지를 작성하여야 한다. 단, 시험의 요건, 판정, 재시험 및 평가 비율, 출제 범위 등은 학과평가와 같다.

다. 현장실습이 시행될 경우, 교관은 1년에 2회 이상 피교육생이 복무 또는 근무하고 있는 현장을 방문하여 정비실습을 적절하게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개선조치 사항 등을 포함한 현장방문 보고서를 작성하여 5년간 보관한다.

제7장 학사관리

제26조(학사보고) 항공종사자 자격별 훈련기준·지침 및 전문교육기관 지정요령 별표 4에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에서 교육훈련통합관리시스템이 마련된 경우 지침에 따라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보고할 수 있다.

1. 입과 보고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 입과 보고서를 입과 후 15일 이내에 보고

가. 입과자 명단

나. 교육기간

2. 결과 보고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 교육과정 결과를 교육종료 후 15일 이내에 보고

가. 교육이수자의 명단

나. 교육기간

다. 학과시험 및 실기시험 수험자의 명단

라. 학과시험 및 실기시험 수험자의 시험평가 결과

마. 입과 및 결과보고 담당 부서 : 기술교육원장이 지정한 행정담당자

제27조(증명서 발급) 항공종사자 자격별 훈련기준·지침 및 전문교육기관 지정요령 별표 3 및 4에 따라 2.5년간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에게 과정이수 증명서를 발급하며 다음의 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고시 별지 제4호 서식)

1. 전문교육기관의 명칭

2. 이수증명서 발급 일련번호

3. 이수자의 성명, 생년월일 및 현주소

4. 이수한 교육과정명(학과교육 및 실기교육 이수를 명기할 것)

5. 교육과정을 만족하게 수료했다는 내용의 진술

6. 이수증명서 발급의 연월일

7. 이수증명서 발급자의 직책, 성명 및 직인

제28조(기록 및 보관) 기술교육원은 학사와 관련된 학생의 출석 등 교육훈련 내용 및 결과 등에 대해 피교육생별, 교육과정별로 문서를 작성하여 졸업 후 10년간 기록보관 유지하며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교육과정명

2. 피교육생의 성명, 생년월일 및 현주소

3. 피교육생의 출석기록부

4. 교육훈련 이수과목 및 내용

5. 교육훈련 평가결과

6. 이수일자 등

부 칙

본 규정의 제정 및 개정은 항공안전법 제29조3 및 시행규칙 제104조 별표12, 항공종사자 자격별 훈련 기준, 지침 및 전문교육 기관 지정 요령 및 고등교육법에 의해 제정된, 경운대학교 학칙을 준용하여, 총장의 결재를 받은 후 제정한다.

1. **(시행일)** 본 규정은 201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준용)**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들은 항공안전법 제48조 3 및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04조 및 별표12, 항공종사자 자격별 훈련기준·지침 및 전문교육기관 지정요령을 우선하여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고등교육법에 의하여 제정된 경운대학교 학칙을 준용한다.